

광주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56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임혜원

변 론 종 결 2021. 5. 21.

판 결 선 고 2021. 6. 11.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가단5024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전남 해남군 B 임야 54,347㎡에 관하여, ①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9. 4. 3. 접수 제84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대출기간을 5년, 이자를 연 4.07%(변동금리), 지연손해금을 연 12%, 상환방법을 '2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는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9. 5.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 17.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대지급금의 합계는 84,123,465원(= 원금 77,560,000원 + 이자 1,261,643원 + 지연손해금 3,276,931원 + 대지급금 2,024,891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4. 2. C와 사이에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B 임야 54,3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19. 4. 3. 접수 제846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437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9. 4. 2.경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이 사건 대출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C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약 2개월 후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의 무자력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①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② 시가 각 46,569,600원 및 9,849,600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E 대 1,848㎡와 그 지상 건물, ③ 시가 51,975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F 도로 9㎡, ④ 시가 1,235,780원 상당의 전남 나주시 G 임야 97㎡를 소유하고 있어 약 117,706,955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사실, 반면 C는 당시 ① 원고에 대한 원금 77,56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 ② H 유한회사 및 I 유한회사에 대한 원금 각 1,027,099,060원 및 537,660,131원 상당의 보증채무, ③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574,977,110원 상당의 보증채무, ④ J은행에 대한 393,297,000원 상당의 대출금 및 보증채무, ⑤ 기업은행에 대한 28,049,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적어도 합계 2,638,642,301원 이상의 소극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다른 일반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C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K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K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담당해 오던 화물운수업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료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K는 2019. 4.까지 L과 물품운송거래를 할 수 있었고, 2019. 5. 초순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K의 영업권과 직원, 재고, 거래처 등을 양수함으로써 K를 승계한 후 L과 운송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K와 M이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 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L은 2017. 4.경 K와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여 2017. 4. 23.부터 2019. 3. 31.까지 물품운송을 한 사실, M이 2019. 4.부터 L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K의 사업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L은 2017. 4. 23.부터 2019. 3. 31.까지 K와의 물품운송거래에 따른 운송료 445,551,810원 중 102,369,636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미지급 운송료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K의 대표이사인 C는 위 기존 운송료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L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9. 4. 30.경까지 K와 사이에 물품운송거래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 1, 9,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4.경부터 L은 M과 물품운송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L이 2019. 5.경부터는 K와 물품운송거래를 하지 않고 M과 물품운송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는 M이 2019. 5. 초순경 K의 영업권, 직원 등을 승계하였거나 두 회사는 C가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M과 거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L과 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

(1) 피고의 주장

C와 K는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운송료 지급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2019. 1.경부터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준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압류등기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는 C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K는 2017. 4.경부터 L과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L의 물품운송에 대한 운송료를 다음 달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통상 해당 달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운송료를 지급해 왔는데, 2018. 10.분 운송료 일부는 2019. 2.경, 2018. 11.분 운송료 일부는 2019. 3. 말경 각 지급하였고, 2018. 12.분 운송료는 2019. 5.경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2019. 1.분 내지 2019. 3.분 운송료는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경 C에게 연체된 운송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C는 피고에게 유동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K와 L의 거래 기간, L의 운송료 지급 내역과 지체 내역, 피고의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C의 답변 내용 및 피고는 K의 대표이사인 C가 K의 L에 대한 운송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9. 3.경부터는 C의 자금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L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대표이사로서 개인 자금을 L의 운영자금으로 투여하였으므로, L의

K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를 변제받기 위하여 K 및 C에 대한 L의 운송료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L의 운송료 채권은 법인인 L과 K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임에도 피고 개인이 L으로부터 운송료 채권을 양수받아 K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운송료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이는 기존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9. 4. 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이지영, 판사 김윤선